

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사람
  3.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
  4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- ② 제1항에 의한 정원 외 입학생이 제적이나 자퇴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15조(편입학)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16조(입학과 편입학의 취소) 총장은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, 외국인 학생이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제반 서류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17조(학과·전공의 변경) ① 학과의 변경(이하 “전과”라 한다) 및 전공의 변경은 진출 및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의 주임교수의 허가와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. 단, 전과 및 전공 변경은 소속 대학원 내에서만 가능하다. <개정 2022. 1. 26.>

② 전과 및 전공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 1. 26.>

**제18조(휴학)** ①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일반휴학 : 가정 사정,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
  2. 입영 또는 복무휴학 :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른 휴학
- ②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

의 1 이내에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입영 또는 복무, 장기질병, 임신·출산·육아, 장기해외근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때에는 제출시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- ③ 휴학기간은 1회에 1년(2학기)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통산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년(4학기), 석·박사통합과정은 4년(8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이 속한 학기부터 전역일 또는 복무종료일이 속한 학기까지로 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임신·출산, 육아(만 8세 이하,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와 관련된 사유로 필요한 경우 자녀 1명당 3년(6학기)까지 휴학할 수 있다. 이 경우 휴학횟수, 휴학제한기간, 휴학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⑤ 장기질병 또는 해외·지방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휴학횟수, 휴학제한기간,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⑥ 총장이 인정하는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년(4학기) 이내로 하되, 휴학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⑦ 휴학기간은 제24조제3항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⑧ 그 밖의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**제19조(휴학의 제한)** ① 신입생은 입학 후 1학기동안 휴학할 수 없다. 다만, 입영 또는 복무, 29일 이상의 장기질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소속 대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중에 있는 학생은 입영 또는 복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.

**제20조(복학)** ① 휴학 중인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한다.

- ②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- ③ 특별전형은 학칙 및 「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」, 「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」의 정원 외 입학 전형에 따른다.
- ④ 대학원위원회는 각 전형 실시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사정한다.
- ⑤ 대학원위원회의 사정을 거친 사람에 대하여 총장이 입학을 허가한다.

제8조(배점) 서류심사 및 구술면접의 배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.

## 2절 학적관리

제9조(입학허가의 취소) 학칙 제16조에서 “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
2.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
3. 그 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·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

**제10조(일반휴학)** ①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등록 기간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- ② 휴학기간의 연장은 휴학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학칙 제18조제5항의 장기질병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29일 이상의 진단서(국공립종합병원,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 한한다), 해외·지방근무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근무지·근무기간 등이 포함된 발령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입영 또는 복무 휴학)** ①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려는 학생은 입영일 또는 복무 시작일 이전에 증빙서류(입영통지서 사본 등)를 첨부하여 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일반휴학 중인 학생이 입영 또는 복무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휴학 기간 만료 전 및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으로의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또는 복무 시작 전에 변경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보호자가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입영 후 귀향조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입영 또는 복무 휴학 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복학과 등록금)** ① 학칙 제20조의 복학은 소정의 복학신청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.

② 휴학기간 만료 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 납입을 완료하고,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 휴학 당시 등록을 필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에는 제2항의 등록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.

④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3조(재입학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개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학칙 제21조 및 제22조제1호·제2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청하기 시작일 이전에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사람

2. 학칙 제22조제3호·제4호에 의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적 이후 재입학 신